

의안번호	제 호	의결사항
의결 연월일	2021. . . (제 회)	

산림기술진흥및관리에관한법률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제출자	국무위원 김현수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제출연월일	2021. . .

법제처 심사 전

1. 의결주문

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산림기술개발전문기관의 지정 취소 등 행정처분 근거를 마련하고 조경분야와 유사한 산림사업에 대하여 산림기술용역업 등록요건을 완화하는 내용으로 「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행정처분 세부기준과 조경분야도 참여할 수 있는 산림사업을 구체적으로 정하며,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개정에 따른 인용규정을 개정하고 과태료 부과처분에 대한 가중처분 시 위반차수의 적용 기준을 마련하여 해석의 혼란을 사전에 차단하는 등 법령상 미비점을 개선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가. 산림기술개발전문기관에 대한 지정명령, 지정취소 세부기준 마련(안 제4조의2, 별표 1의1 신설)

- 1) 산림기술개발전문기관이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받는 등 행정처분 세부기준을 마련

나. 조경분야 기술사사무소나 엔지니어링사업자의 산림사업에 대한 기준 마련(안 제12조제1항 및 관련 별표 3, 4, 5)

- 1) 도시숲, 수목원, 숲길, 유아숲체험원의 산림사업에 대하여 조경분야도 참여할 수 있도록 산림기술용역업 및 산림기술자 업무 범위와 배치기준을 세부적으로 정함

다. 과태료 부과기준의 누적 회차 적용기준 마련(안 별표 7 제1호)

- 1) 부과처분의 가중된 부과처분을 할 경우 일정기간이 지난 처분은 누적회수로 적용하지 않도록 규정

4. 주요토의과제

없 음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관계부처와 합의 전

라.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 : 예정

3) 행정규제 :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예정

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항제5호 중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2조제7호”를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2조제8호”로 한다.

제4조의 제목 “(산림기술개발 전문기관의 지정 등)”을 “(산림기술개발 전문기관의 지정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법 제4조제2항”을 “법 제4조제8항”으로, “산림기술의 개발을 위한 전문기관(이하 “전문기관”이라 한다)”을 “산림기술개발전문기관”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전문기관”을 “산림기술개발전문기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법 제4조제2항”을 “법 제4조제8항”으로, “전문기관”을 “산림기술개발전문기관”으로 한다.

제4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조의2(산림기술개발전문기관의 지정명령 등) ① 법 제4조제8항에 따른 산림기술개발전문기관의 지정명령, 지정취소의 세부기준은 별표 1의1과 같다.

② 산림청장은 제1항에 따라 지정명령, 지정취소를 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산림청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제6조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산림기술개발전문기관

제12조제1항 및 제2항을 각각 제2항 및 제3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1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2항(종전의 제1항) 중 “법 제15조제1항제1호다목”을 “법 제15조제1항제1호마목”으로 한다.

①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림사업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산림교육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12조제1항에 따른 유아숲체험원
2.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에 따른 숲길
3.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도시숲·생활숲·가로수(이하 “도시숲등”이라 한다)
4. 「수목원·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수목원

제13조제1항제1호아목 중 ““도시숲등조성·관리사업””을 ““도시숲등 조성·관리사업””으로 한다.

제22조제1호 중 “전문기관”을 “산림기술개발전문기관”으로 한다.

별표 1의 제목 중 “산림기술개발 전문기관의 지정기준”을 “산림기술개발전문기관의 지정기준”으로 한다.

별표 1의1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표 3부터 별표 5까지를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별표 7 제1호나목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적발된 날부터 1년 이전에 한 부과처분은 가중처분의 차수를 정할 때 반영하지 않는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의1]

산림기술개발전문기관 시정명령 등의 기준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행정처분기준은 최근 3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행정처분을 받은 날과 그 처분 후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하여 적발된 날을 기준으로 한다.

나. 위반행위가 둘 이상인 경우로서 그에 해당하는 각각의 처분기준이 다른 경우에는 그 중 무거운 처분기준에 따른다.

2. 개별기준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행정처분기준	
		1차 위반	2차 위반
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법 제4조 제6항제1호	지정취소	
나. 지정기준을 갖 추지 못하게 된 경우	법 제4조 제5항, 제6항	시정명령	지정취소

■ 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3] <개정 2021. 6. 8.>

산림기술자의 종류, 자격 요건 및 업무 범위(제10조 관련)

기술 종류	기술 등 급	자격 요건	업무 범위
산림 경영 기술자	기술 특급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산림기술사의 자격을 가진 사람	1. 산림 조사 및 산림경영계획서 작성 2. 다음 각 목의 산림사업 설계·시행 및 감리
	기술 고급	1.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산림기술사의 자격을 가진 사람으로서 해당 전문분야의 관련 업무를 6년 이상 수행한 사람 2.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산림산업기사의 자격을 가진 사람으로서 해당 전문분야의 관련 업무를 9년 이상 수행한 사람	가. 조림, 벌채, 숲가꾸기 등 산림의 조성·육성 또는 이용을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이하 “산림조성사업”이라 한다) 나. 산림병해충 방제사업 다. 산림욕장의 조성사업 라. 도시숲등조성·관리사업
	기술 중급	1.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산림기술사의 자격을 가진 사람으로서 해당 전문분야의 관련 업무를 3년 이상 수행한 사람 2.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산림산업기사의 자격을 가진 사람으로서 해당 전문분야의 관련 업무를 6년 이상 수행한 사람	
	기술 초급	1.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산림기술사의 자격을 가진 사람 2.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산림산업기사의 자격을 가진 사람	
	기능 특급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산림기능장의 자격을 가진 사람	다음 각 호의 산림사업 시행 및 관리 1. 산림조성사업
	기능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산림기능	2. 산림병해충 방제사업

	1급	사의 자격을 가진 사람	3. 산림욕장의 조성사업
	기능 2급	산림기술자 교육훈련기관에서 6주 이상의 산림경영기술자 기능등급 업무 범위에 해당하는 교육과정을 이수한 사람	4. 도시숲등조성·관리사업
산림 공학 기술자	기술 특급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산림기술사의 자격을 가진 사람으로서 산림기술자 교육훈련기관에서 2주 이상의 산림공학 교육과정을 이수한 사람	1. 다음 각 목의 산림사업 설계·시행 및 감리 가. 임도사업 나. 사방사업 다. 유아숲체험원등 조성사업 라. 자연휴양림등 조성사업 마. 수목원 조성사업 바. 수목장림 조성사업 사. 산림복원사업 아. 산지의 보전·이용, 토석채취 및 재해방지·복구 등에 관한 사업 자. 산불의 예방 및 진화를 위한 사업(산불예방·진화시설 등 산림관리기반시설의 설치를 포함한다)
	기술 고급	1.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산림기술사의 자격을 가진 사람으로서 해당 전문분야의 관련 업무를 6년 이상 수행하고 산림기술자 교육훈련기관에서 2주 이상의 산림공학 교육과정을 이수한 사람 2.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산림산업기사의 자격을 가진 사람으로서 해당 전문분야의 관련 업무를 9년 이상 수행하고 산림기술자 교육훈련기관에서 2주 이상의 산림공학 교육과정을 이수한 사람 3.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토목기사 이상의 자격을 가진 사람으로서 해당 전문분야의 관련 업무를 11년 이상 수행하고 산림기술자 교육훈련기관에서 2주 이상의 산림공학 교육과정을 이수한 사람 4.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토목산업기사의 자격을 가진 사람으로서 해당 전문분야의 관련 업무를 14년 이상 수행하고 산림기술자 교육훈련	2. 산지전용·산지일시사용과 관련된 표고(標高) 및 평균경사도 조사와 재해위험성 검토

	기관에서 2주 이상의 산림공학 교육 과정을 이수한 사람
기술 중급	1.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산림기사의 자격을 가진 사람으로서 해당 전문분야의 관련 업무를 3년 이상 수행하고 산림기술자 교육훈련기관에서 2주 이상의 산림공학 교육과정을 이수한 사람 2.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산림산업기사의 자격을 가진 사람으로서 해당 전문분야의 관련 업무를 6년 이상 수행하고 산림기술자 교육훈련기관에서 2주 이상의 산림공학 교육과정을 이수한 사람 3.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토목기사 이상의 자격을 가진 사람으로서 해당 전문분야의 관련 업무를 8년 이상 수행하고 산림기술자 교육훈련기관에서 2주 이상의 산림공학 교육과정을 이수한 사람 4.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토목산업기사의 자격을 가진 사람으로서 해당 전문분야의 관련 업무를 11년 이상 수행하고 산림기술자 교육훈련기관에서 2주 이상의 산림공학 교육과정을 이수한 사람
기술 초급	1.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산림기사의 자격 또는 자연생태복원기사의 자격을 가진 사람으로서 산림기술자 교육훈련기관에서 2주 이상의 산림공학 교육과정을 이수한 사람

		2.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산림산업기사의 자격 또는 자연생태복원산업기사의 자격을 가진 사람으로서 산림기술자 교육훈련기관에서 2주 이상의 산림공학 교육과정을 이수한 사람 3.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토목기사 이상의 자격을 가진 사람으로서 해당 전문분야의 관련 업무를 5년 이상 수행하고 산림기술자 교육훈련기관에서 2주 이상의 산림공학 교육과정을 이수한 사람 4.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토목산업기사의 자격을 가진 사람으로서 해당 전문분야의 관련 업무를 7년 이상 수행하고 산림기술자 교육훈련기관에서 2주 이상의 산림공학 교육과정을 이수한 사람	
녹지 조경 기술자	기술 특급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조경기술사의 자격을 가진 사람	다음 각 호의 산림사업 설계·시행 또는 감리 1. 유아숲체험원 조성사업 2. 숲길 조성사업 3. 도시숲등조성·관리사업 4. 수목원 조성사업 5. 다음 각 목의 산림사업 중 건당 공사비 규모가 10억원 이하인 사업의 시행 및 건당 공사비 규모가 2억원 이하인 사업의 설계 가. 자연휴양림등 조성사업
	기술 고급	1.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조경기술사의 자격을 가진 사람으로서 해당 전문분야의 관련 업무를 6년 이상 수행한 사람 2.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조경산업기사의 자격을 가진 사람으로서 해당 전문분야의 관련 업무를 9년 이상 수행한 사람	
	기술	1.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조경기	

	중급	사의 자격을 가진 사람으로서 해당 전문분야의 관련 업무를 3년 이상 수행한 사람 2.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조경산업기사의 자격을 가진 사람으로서 해당 전문분야의 관련 업무를 6년 이상 수행한 사람	(숲길은 제외한다) 나. 수목장림 조성사업
	기술 초급	1.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조경기사의 자격을 가진 사람 2.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조경산업기사의 자격을 가진 사람	

비고

1. “해당 전문분야의 관련 업무”란 기술종류별 업무 범위에 해당하는 업무를 말한다.
- 녹지조경기술자의 관련 업무는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7조의 조경공사, 조경식재공사, 조경시설물공사의 설계·시공·감리업무를 포함한다.
2. 해당 전문분야의 관련 업무 경력은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자격을 취득하기 전과 취득한 후의 경력을 모두 포함한다.
3. “산림기술자 교육훈련기관”이란 산림교육원과 법 제7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라 지정받은 교육기관을 말한다.
4. “산림공학 교육과정”이란 산림공학기술자의 업무 범위와 관련되는 산림기술 교육과정을 말한다.
5. 산림공학기술자 자격을 취득하기 위하여 산림기술자 교육훈련기관에서 실시하는 산림공학 교육과정을 이수한 사람은 다른 산림공학기술자 기술등급의 자격 및 경력요건을 갖추면 추가로 산림공학 교육과정을 이수하지 않고 다른 기술등급의 산림공학기술자 자격을 가질 수 있다.

산림기술용역업의 등록 요건 및 업무 범위(제12조제2항 관련)

구분	세부 분야	등록 요건			업무 범위
		기술인력	시설	자본금	
종합업	종합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인력 1. 기술특급 산림경영기술자 자격과 기술특급 산림공학기술자 자격을 모두 보유한 사람 1명을 포함한 산림기술자 5명 이상. 다만, 녹지조경기술자는 1명 이하로 하여야 한다. 2. 기술고급 산림경영기술자 자격과 기술고급 산림공학기술자 자격을 모두 보유한 사람 2명을 포함한 산림기술자 6명 이상. 다만, 녹지조경기술자는 1명 이하로 하여야 한다.	사무실	5천만원 이상	산림사업의 설계·감리 및 안전성 분석
	산림경영	1. 2018년 11월 29일부터 2020년 11월 28일까지: 기술고급 이상인 산림경영기술자 1명 이상 2. 2020년 11월 29일 이후: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인력 가. 기술고급 이상인 산림경영기술자 1명 이상 나. 기술초급 이상인 산림경영기술자 2명 이상	사무실	해당 없음	1. 산림 조사 및 산림경영계획서 작성 2. 다음 각 목의 산림사업 설계·감리 및 안전성 분석 가. 산림조성사업 나. 산림병해충 방제사업
전문업	산림생태	1. 2018년 11월 29일부터 2020년 11월 28일까지: 기	사무실	해당 없음	다음 각 호의 산림사업 설계·감리 및 안전성 분석

	· 공학	술고급 이상인 산림공학 기술자 1명 이상 2. 2020년 11월 29일 이후: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인력 가. 기술고급 이상인 산 림공학기술자 1명 이 상 나. 기술초급 이상인 산 림공학기술자 2명 이 상			1. 임도사업 2. 사방사업 3. 산림복원사업 4. 산지의 보전·이용, 토석채 취 및 재해방지·복구 등에 관한 사업 5. 산불의 예방 및 진화를 위 한 사업(산불예방·진화시설 등 산림관리기반시설의 설 치를 포함한다)
	산림 휴양	1. 2018년 11월 29일부터 2020년 11월 28일까지: 기 술고급 이상인 산림공학 기술자 1명 이상 2. 2020년 11월 29일 이후: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인력 가. 기술고급 이상인 산 림공학기술자 1명 이 상 나. 기술초급 이상인 산 림경영기술자 1명 이 상 다. 기술초급 이상인 산 림공학기술자 또는 기 술초급 이상인 녹지조 경기술자 1명 이상	사무실	해당 없음	다음 각 호의 산림사업 설계· 감리 및 안전성 분석 1. 유아숲체험원등 조성사업 2. 자연휴양림등 조성사업 3. 수목장림 조성사업
	녹지 조경	1. 2018년 11월 29일부터 2020년 11월 28일까지: 기 술고급 이상인 산림경영 기술자, 기술고급 이상인 산림공학기술자 또는 기 술고급 이상인 녹지조경 기술자 1명 이상	사무실	해당 없음	다음 각 호의 산림사업 설계· 감리 및 안전성 분석 1. 유아숲체험원 조성사업 2. 숲길 조성사업 3. 도시숲등조성·관리사업 4. 수목원 조성사업

		2. 2020년 11월 29일 이후: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인력 가. 기술고급 이상인 산림경영기술자, 기술고급 이상인 산림공학기술자 또는 기술고급 이상인 녹지조경기술자 1명 이상 나. 기술초급 이상인 산림경영기술자, 기술초급 이상인 산림공학기술자 또는 기술초급 이상인 녹지조경기술자 2명 이상			
--	--	---	--	--	--

비고

1. 기술인력

가. “기술인력”이란 산림기술용역업체에 상시 근무하면서 해당 사업의 업무를 전담하는 사람을 말하며, 법 제12조에 따라 산림기술자 자격이 정지된 사람과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라 산림기술자 자격요건과 관련된 국가기술자격이 취소되거나 정지된 사람은 제외한다.

나. 산림기술자가 사망, 신체·정신상의 장애 또는 병역의무 이행 등으로 상시 근무가 불가능하여 기술인력 요건에 미달하게 된 경우에는 1개월 이내에 해당 인력을 충원해야 한다.

다.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에 따른 엔지니어링사업자로 신고한 자 또는 「기술사법」에 따른 기술사사무소 개설 등록을 한 자가 추가로 산림기술용역업을 등록하려는 경우에 산림기술용역업의 기술인력 요건에 해당하는 산림기술자를 이미 고용하고 있을 때에는 해당 기술인력 요건을 갖춘 것으로 본다.

라. 전문업을 등록할 때 기술인력의 인정기준은 다음과 같다.

- 1) 기술특급의 산림기술자 1명을 갖춘 경우에는 같은 기술종류의 기술고급 산림기술자 1명과 기술초급 산림기술자 1명을 갖춘 것으로 본다.
- 2) 2개 이상의 전문업을 등록하려는 경우나 이미 등록한 산림기술용역업체가 다른 전문업을 추가로 등록하려는 경우에 다른 전문업의 기술인력 요건에 해당하는 산림기술자(기술종류 및 기술등급이 같거나 그 수준 이상의 자격을 가진 사람을 포함한다)를 이미 고용하고 있을 때에는 1개의 전문업에 한정하여 해당

기술인력 요건에 해당하는 산림기술자를 갖춘 것으로 본다.

2. 시설: 사무실은 산림기술용역업을 수행하는 데 적합한 사무실을 말한다.

3. 자본금

가. “자본금”이란 납입자본금과 실질자본금을 말하고, 개인의 경우 영업용 자산평가액을 말한다.

나. 주식회사 외의 법인인 경우에는 출자금을 자본금으로 한다.

산림기술자등의 배치기준(제15조제1항 관련)

구분	사업종류	규모	배치기준
조사	산림 조사	5만제곱미터 이하	기술초급 이상 산림경영기술자 1명 이상
		5만제곱미터 초과	기술고급 이상 산림경영기술자 1명 이상
	표고 및 평균경사도 조사	5만제곱미터 이하	기술초급 이상 산림공학기술자 1명 이상
		5만제곱미터 초과	기술고급 이상 산림공학기술자 1명 이상
	재해위험성 검토	10만제곱미터 이하	기술고급 이상 산림공학기술자 1명 이상
		10만제곱미터 초과	기술특급 산림공학기술자 1명 이상
설계	조립	20만제곱미터 이하	기술초급 이상 산림경영기술자 1명 이상
		100만제곱미터 이하	기술중급 이상 산림경영기술자 1명 이상
		500만제곱미터 이하	기술고급 이상 산림경영기술자 1명 이상
		500만제곱미터 초과	기술특급 산림경영기술자 1명 이상
	벌채	5만제곱미터 이하	기술초급 이상 산림경영기술자 1명 이상
		10만제곱미터 이하	기술중급 이상 산림경영기술자 1명 이상
		20만제곱미터 이하	기술고급 이상 산림경영기술자 1명 이상
		20만제곱미터 초과	기술특급 산림경영기술자 1명 이상
	산림병해충 방제	100만제곱미터 이하	기술초급 이상 산림경영기술자 1명 이상
		200만제곱미터 이하	기술중급 이상 산림경영기술자 1명 이상
		300만제곱미터 이하	기술고급 이상 산림경영기술자 1명 이상
		300만제곱미터 초과	기술특급 산림경영기술자 1명 이상
	숲가꾸기	100만제곱미터 이하	기술초급 이상 산림경영기술자 1명 이상
		300만제곱미터 이하	기술중급 이상 산림경영기술자 1명 이상
		700만제곱미터 이하	기술고급 이상 산림경영기술자 1명 이상
		700만제곱미터 초과	기술특급 산림경영기술자 1명 이상
	임도	공사비 2억원 이하	기술초급 이상 산림공학기술자 1명 이상
		공사비 3억원 이하	기술중급 이상 산림공학기술자 1명 이상
		공사비 10억원 이하	기술고급 이상 산림공학기술자 1명 이상
		공사비 10억원 초과	기술특급 산림공학기술자 1명 이상
	사방	공사비 2억원 이하	기술초급 이상 산림공학기술자 1명 이상
		공사비 5억원 이하	기술중급 이상 산림공학기술자 1명 이상

	공사비 10억원 이하	기술고급 이상 산림공학기술자 1명 이상
	공사비 10억원 초과	기술특급 산림공학기술자 1명 이상
유아숲체험원 등 조성	공사비 2억원 이하	기술초급 이상 산림공학기술자 또는 기술초급 이상 녹지조경기술자 1명 이상
	공사비 10억원 이하	기술중급 이상 산림공학기술자 또는 기술중급 이상 녹지조경기술자 1명 이상
	공사비 20억원 이하	기술고급 이상 산림공학기술자 또는 기술고급 이상 녹지조경기술자 1명 이상
	공사비 20억원 초과	기술특급 산림공학기술자 또는 기술특급 녹지조경기술자 1명 이상
자연휴양림등 조성(숲길은 제외한다)	공사비 2억원 이하	기술초급 이상 산림공학기술자 또는 기술초급 이상 녹지조경기술자 1명 이상
	공사비 10억원 이하	기술중급 이상 산림공학기술자 1명 이상
	공사비 20억원 이하	기술고급 이상 산림공학기술자 1명 이상
	공사비 20억원 초과	기술특급 산림공학기술자 1명 이상
숲길 조성	공사비 1억원 이하	기술초급 이상 산림공학기술자 또는 기술초급 이상 녹지조경기술자 1명 이상
	공사비 3억원 이하	기술중급 이상 산림공학기술자 또는 기술중급 이상 녹지조경기술자 1명 이상
	공사비 10억원 이하	기술고급 이상 산림공학기술자 또는 기술고급 이상 녹지조경기술자 1명 이상
	공사비 10억원 초과	기술특급 산림공학기술자 또는 기술특급 녹지조경기술자 1명 이상
도시숲등의 조성·관리	공사비 1억원 이하	기술초급 이상 산림경영기술자 또는 기술초급 이상 녹지조경기술자 1명 이상
	공사비 3억원 이하	기술중급 이상 산림경영기술자 또는 기술중급 이상 녹지조경기술자 1명 이상
	공사비 10억원 이하	기술고급 이상 산림경영기술자 또는 기술고급 이상 녹지조경기술자 1명 이상
	공사비 10억원 초과	기술특급 산림경영기술자 또는 기술특급 녹지조경기술자 1명 이상
수목장림	공사비 2억원 이하	기술초급 이상 산림공학기술자 또는 기술

	조성		초급 이상 녹지조경기술자 1명 이상
		공사비 10억원 이하	기술중급 이상 산림공학기술자 1명 이상
		공사비 20억원 이하	기술고급 이상 산림공학기술자 1명 이상
		공사비 20억원 초과	기술특급 산림공학기술자 1명 이상
	산림복원	공사비 2억원 이하	기술초급 이상 산림공학기술자 1명 이상
		공사비 10억원 이하	기술중급 이상 산림공학기술자 1명 이상
		공사비 20억원 이하	기술고급 이상 산림공학기술자 1명 이상
		공사비 20억원 초과	기술특급 산림공학기술자 1명 이상
	산지복구	복구비 예치금액 1억원 이하	기술초급 이상 산림공학기술자 1명 이상
		복구비 예치금액 3억원 이하	기술중급 이상 산림공학기술자 1명 이상
		복구비 예치금액 20억원 이하	기술고급 이상 산림공학기술자 1명 이상
		복구비 예치금액 20억원 초과	기술특급 산림공학기술자 1명 이상
산림 사업 시행	조립	전체 사업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1명 이상 1. 기술초급 이상 산림경영기술자 2. 해당 업무 실무경력이 2년 이상인 기능2 급 이상 산림경영기술자(국유림만 해당한 다)
	벌채	연간 벌채량 5천세제곱미터 이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1명 이상 1. 기술초급 이상 산림경영기술자 2. 해당 업무 실무경력이 2년 이상이고,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제31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전문인력 양 성기관에서 35시간 이상 원목생산 관련 교육을 이수한 사람
		연간 벌채량 5천세제곱미터 초과	기술초급 이상 산림경영기술자 1명 이상
	산림병해충방 제	전체 사업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1명 이상

		1. 기술초급 이상 산림경영기술자 이상 2. 해당 업무 실무경력이 2년 이상인 기능2급 이상 산림경영기술자(국유림만 해당한다)
숲가꾸기	600만제곱미터 이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1명 이상 1. 기술초급 이상 산림경영기술자 2. 해당 업무 실무경력이 2년 이상인 기능2급 이상 산림경영기술자(국유림만 해당한다)
	600만제곱미터 초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2명 이상 1. 기술초급 이상 산림경영기술자 2. 해당 업무 실무경력이 2년 이상인 기능2급 이상 산림경영기술자(국유림만 해당한다)
임도	공사비 3억원 이하	기술초급 이상 산림공학기술자 1명 이상
	공사비 3억원 초과	기술중급 이상 산림공학기술자 1명 이상
유아숲체험원 등 조성	공사비 10억원 이하	기술초급 이상 산림공학기술자 또는 기술초급 이상 녹지조경기술자 1명 이상
	공사비 10억원 초과	기술중급 이상 산림공학기술자 또는 기술중급 이상 녹지조경기술자 1명 이상
자연휴양림등 조성(숲길은 제외한다)	공사비 10억원 이하	기술초급 이상 산림공학기술자 또는 기술초급 이상 녹지조경기술자 1명 이상
	공사비 10억원 초과	기술중급 이상 산림공학기술자 1명 이상
숲길 조성	공사비 3억원 이하	기술초급 이상 산림공학기술자 또는 기술초급 이상 녹지조경기술자 1명 이상
	공사비 3억원 초과	기술중급 이상 산림공학기술자 또는 기술중급 이상 녹지조경기술자 1명 이상
도시숲등의 조성·관리	공사비 3억원 이하	기술초급 이상 산림경영기술자 또는 기술초급 이상 녹지조경기술자 1명 이상
	공사비 3억원 초과	기술중급 이상 산림경영기술자 또는 기술중급 이상 녹지조경기술자 1명 이상

감리	수목장립 조성	공사비 10억원 이하	기술초급 이상 산림공학기술자 또는 기술초급 이상 녹지조경기술자 1명 이상
		공사비 10억원 초과	기술중급 이상 산림공학기술자 1명 이상
	산림복원	공사비 3억원 이하	기술초급 이상 산림공학기술자 1명 이상
		공사비 3억원 초과	기술중급 이상 산림공학기술자 1명 이상
	조립	20만제곱미터 이하	기술중급 이상 산림경영기술자 1명 이상
		500만제곱미터 이하	기술고급 이상 산림경영기술자 1명 이상
		500만제곱미터 초과	기술특급 산림경영기술자 1명 이상
	벌채	5만제곱미터 이하	기술중급 이상 산림경영기술자 1명 이상
		20만제곱미터 이하	기술고급 이상 산림경영기술자 1명 이상
		20만제곱미터 초과	기술특급 산림경영기술자 1명 이상
	산림병해충 방제	100만제곱미터 이하	기술중급 이상 산림경영기술자 1명 이상
		300만제곱미터 이하	기술고급 이상 산림경영기술자 1명 이상
		300만제곱미터 초과	기술특급 산림경영기술자 1명 이상
	숲가꾸기	100만제곱미터 이하	기술중급 이상 산림경영기술자 1명 이상
		700만제곱미터 이하	기술고급 이상 산림경영기술자 1명 이상
		700만제곱미터 초과	기술특급 산림경영기술자 1명 이상
	임도	공사비 2억원 이하	기술중급 이상 산림공학기술자 1명 이상
		공사비 10억원 이하	기술고급 이상 산림공학기술자 1명 이상
		공사비 10억원 초과	기술특급 산림공학기술자 1명 이상
	사방	공사비 2억원 이하	기술중급 이상 산림공학기술자 1명 이상
		공사비 10억원 이하	기술고급 이상 산림공학기술자 1명 이상
		공사비 10억원 초과	기술특급 산림공학기술자 1명 이상
	유아숲체험원 등 조성	공사비 2억원 이하	기술중급 이상 산림공학기술자 또는 기술중급 이상 녹지조경기술자 1명 이상
		공사비 20억원 이하	기술고급 이상 산림공학기술자 또는 기술고급 이상 녹지조경기술자 1명 이상
		공사비 20억원 초과	기술특급 산림공학기술자 또는 기술특급 녹지조경기술자 1명 이상
	자연휴양림등 조성(숲길은 제외한다)	공사비 2억원 이하	기술중급 이상 산림공학기술자 1명 이상
		공사비 20억원 이하	기술고급 이상 산림공학기술자 1명 이상
		공사비 20억원 초과	기술특급 산림공학기술자 1명 이상
	숲길 조성	공사비 1억원 이하	기술중급 이상 산림공학기술자 또는 기술

			중급 이상 녹지조경기술자 1명 이상
		공사비 10억원 이하	기술고급 이상 산림공학기술자 또는 기술고급 녹지조경기술자 1명 이상
		공사비 10억원 초과	기술특급 산림공학기술자 또는 기술특급 녹지조경기술자 1명 이상
	도시숲등의 조성·관리	공사비 1억원 이하	기술중급 이상 산림경영기술자 또는 기술중급 이상 녹지조경기술자 1명 이상
		공사비 10억원 이하	기술고급 이상 산림경영기술자 또는 기술고급 녹지조경기술자 1명 이상
		공사비 10억원 초과	기술특급 산림경영기술자 또는 기술특급 녹지조경기술자 1명 이상
	수목장림 조성	공사비 2억원 이하	기술중급 이상 산림공학기술자 1명 이상
		공사비 20억원 이하	기술고급 이상 산림공학기술자 1명 이상
		공사비 20억원 초과	기술특급 산림공학기술자 1명 이상
	산림복원	공사비 2억원 이하	기술중급 이상 산림공학기술자 1명 이상
		공사비 20억원 이하	기술고급 이상 산림공학기술자 1명 이상
		공사비 20억원 초과	기술특급 산림공학기술자 1명 이상
	산지복구	복구비 예치금액 3억원 이하	기술중급 이상 산림공학기술자 1명 이상
		복구비 예치금액 10억원 이하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인력 1. 기술고급 이상 산림공학기술자 1명 이상 2. 기술초급 이상 산림공학기술자 1명 이상
		복구비 예치금액 10억원 초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인력 1. 기술특급 산림공학기술자 1명 이상 2. 기술중급 이상 산림공학기술자 1명 이상

비고

1. 법 제12조에 따라 산림기술자 자격이 정지된 사람 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라 산림기술자 자격요건과 관련된 국가기술자격이 취소되거나 정지된 사람과 법 제24조제1항에 따라 부과된 누적벌점이 7점 이상인 산림기술자는 배치기준에 해당하는 기술인력에서 제외한다.
2. 사방사업의 시행과 관련된 산림기술자 배치기준은 「사방사업법」 제8조에 따른다.
3. 숲가꾸기사업 및 산림병해충 방제사업의 규모는 같은 필지 또는 연접한 사업지역의 면적을 합하여 산정한다.

4. 복구비 예치금액은 「산지관리법」 제38조제1항 본문에 따라 예치한 비용을 말하며, 같은 항 단서에 따라 복구비 예치가 면제된 경우에는 산지전용 등을 한 면적에 같은 조 제5항에 따른 단위면적당 복구비산정기준을 곱한 금액을 말한다.
5. 발주청은 산림사업의 규모 및 특수성 등을 고려하여 배치될 산림기술자의 등급, 종류 등을 따로 정할 수 있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2조(정의) ①·② (생략) ③ 법 제2조제8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단체”란 다음 각 호의 기관·단체를 말한다. 1. ~ 4. (생략) 5.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사업시행자(해당 사업시행자의 자본금의 2분의 1 이상을 출자한 자로서 사업의 시행을 위탁받은 자를 포함하되,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으로부터 발주청이 되는 것을 승인받은 자로 한정한다)	제2조(정의) ①·② (현행과 같음) ③ ----- ----- ----- ---. 1. ~ 4. (현행과 같음) 5.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2조제8호----- ----- ----- ----- ----- ----- ----- -----
제4조(산림기술개발 전문기관의 지정 등) ① 법 제4조제2항에 따른 <u>산림기술의 개발을 위한 전문기관</u> (이하 “전문기관”이라 한다)의 지정기준은 별표 1과 같다. ② <u>전문기관</u> 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림청장에게	제4조(산림기술개발전문기관의 지정 등) ① 법 제4조제8항----- --- <u>산림기술개발전문기관</u> --- ----- ----- ----- ---. ② <u>산림기술개발전문기관</u> ----- ----- -----

지정을 신청하여야 한다.

③ 산림청장은 법 제4조제2항에 따라 전문기관을 지정한 경우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정서를 발급하고, 그 내용을 산림청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신 설>

제6조(산림기술정보체계 구축·운영 업무의 위탁) 법 제6조제5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단체 또는 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법인·단체 또는 기관을 말한다.

1. 전문기관

2.·3. (생략)

제12조(산림기술용역업의 등록 등) <신 설>

-----.

③ ----- 법 제4조제8항-----
---- 산림기술개발전문기관-----

-----.

제4조의2(산림기술개발전문기관의 지정명령 등) ① 법 제4조제8항에 따른 산림기술개발전문기관의 지정명령, 지정취소의 세부기준은 별표 1의1과 같다.

② 산림청장은 제1항에 따라 지정명령, 지정취소를 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산림청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제6조(산림기술정보체계 구축·운영 업무의 위탁) -----

-----.

1. 산림기술개발전문기관

2.·3. (현행과 같음)

제12조(산림기술용역업의 등록 등) ①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① 법 제15조제1항제1호다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별표 3에 따른 녹지조경기술자(별표 4에 따른 녹지조경업을 등록하는 경우만 해당한다)를 말한다.

② (생략)

제13조(산림사업 설계·감리의 범위 등) ① 법 제15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종류와 규모 이상의 산림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산림사업을 말한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림사업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산림교육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12조제1항에 따른 유아숲체험원

2.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에 따른 숲길

3.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도시숲·생활숲·가로수(이하 “도시숲등”이라 한다)

4. 「수목원·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수목원

② 법 제15조제1항제1호다목-----

-----.

③ (현행 제2항과 같음)

제13조(산림사업 설계·감리의 범위 등) ① -----

-----.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보조나 지원을 받아 시행하는
산림사업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산림사
업

가. ~ 사. (생략)

아.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
리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도시숲·생활숲·가
로수의 조성·관리를 위하
여 시행하는 사업(이하
“도시숲등조성·관리사업”
이라 한다)

자. ~ 카. (생략)

2. (생략)

② (생략)

제22조(규제의 재검토) 산림청장
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
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
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
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제4조 및 별표 1에 따른 전문
기관의 지정기준: 2021년 1월
1일

1. -----

--

가. ~ 사. (현행과 같음)

아. -----

“도시숲등 조성·관리사
업”-----

자. ~ 카. (현행과 같음)

2.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제22조(규제의 재검토) -----

-----.

1. ----- 산림
기술개발전문기관-----
--

2. ~ 7. (생략)	2. ~ 7. (현행과 같음)
--------------	------------------

< 의안 소관 부서명 >

산림청 산림일자리창업팀	
연 락 처	(042) 481 - 4187